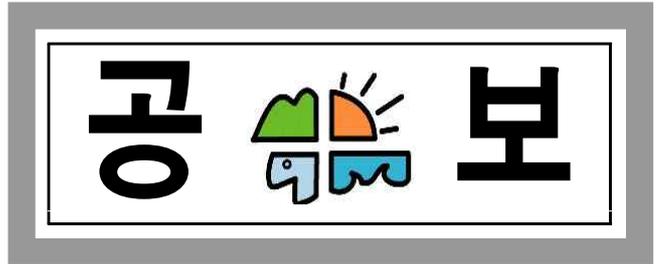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20호 2012년 8월 29일(수)

공 고

-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(안) 공고..... 2

회 램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문화재 금연구역 지정(안) 공고

1. 『문화재보호법』 제14조제5항 및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별표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,
2. 이 지정(안)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고시하고자 사전 공고합니다.

2012년 8 월 29일
속초시장

가. 금연구역 지정(안)

- 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(주거용 건축물 제외)
-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(주거용 건축물 제외)
- 그 밖에 지정문화재(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)중 화재의 위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
 - 국보,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 시설
 -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등 나무, 풀 또는 꽃등이 있는 지역

나. 금연구역 지정 대상 : 붙임1 참조

-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(<http://gis.cha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

다. 공고기간 : 2012. 8. 29 ~ 9. 18(21일간)

라. 공고장소 : 속초시청 홈페이지(<http://sokcho.gangwon.kr>)

마. 의견제출 : 금연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속초시장(속초시 중앙로 183(속초시청 문화체육과)에게 서면으로 제출

바. 기타사항 : 제출기한내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문화체육과(☎639-295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현황 1부.

- 2.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서 1부.

[붙임 1]

금연구역 지정 현황

연번	구분	문화재명	소재지	비고
1	보물 제443호	향성사지 삼층석탑	설악동 산24-2	보호구역 전역
2	사적 제376호	속초 조양동유적	조양동 1529, 1529-1	유적지 전체
3	천연기념물 제171호	설악산천연보호구역	설악동 산20외 인제, 고성, 양양군	천연보호구역 전체
4	천연기념물 제351호	속초 설악동 소나무	설악동 20-5, 15-21	보호구역 전역

제 호

문화재 금연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서

신청인	성 명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	주 소	(전화번호 :)	

의견제출 내용	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--------	----------------

지정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2 년 8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속초시장 귀하